

# 2016 노무관리 Monthly Review

November  
11

## 「2017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제도」 안내 (1편)

###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분야

#### ○ 300인 미만 사업장, 정년 60세 의무화 (2017년 1월 시행)

- (前)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'16.1.1부터 시행
- (後)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'17.1.1부터 전면 시행

#### < 주요 Q&A >

##### ▶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?

-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,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.

##### ▶ '60세 이상'의 '60세'는 만 나이인가요?

- "60세" 이상 정년은 "만 60세"를 의미하며,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(만 60세에 도달한 날)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즉, 반드시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  
예)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, 정년에 도달한 해의 0분기 말일 등

#### ○ 최저임금 관련 변경사항 (2017.1.1. ~ 12.31까지 적용)

	유형	2016년	2017년	비고
최저임금액 인상	시급	6,030원	6,470원	
	일급	48,240원	51,760원	日 8시간
	월급	1,260,270원	1,352,230원	月 209시간 (주40시간제 기준)

※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% 감액 가능 (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감액 불가)

#### ○ 30인 이상 사업장, 채용절차공정화법 적용 (2017년 1월 시행)

상시근로자수	시행일	주요내용
30인 이상	2017.1.1	- 거짓 채용광고 금지 - 반환절차 고지의무 *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- 채용여부 확정 이후 미채용된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- 채용서류반환비용은 회사가 부담
100인 이상	2016.1.1	
300인 이상	2015.1.1	

#### ○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(2016.12.27. 시행)

-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
- \*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## 산업재해보험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

### ○ 출퇴근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확대

- (前)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재해로 인정
- (後) 헌법재판소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(2016.9.29.)  
\* 해당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 필요, 개정 전까지는 현행규정 적용

####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

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# 1. 업무상 사고

- 다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·퇴근 중 발생한 사고

### ○ 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의 확대 (2017.10.28. 시행)

- (前) 프레스, 전단기, 리프트, 곤돌라 등 13종
- (後)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추가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)

#### 안전 검사대상

-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(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은 제외)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국소배기장치 (이동식 제외) ⑧원심기(산업용에 한정) ⑨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⑩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⑪롤러기(밀폐형 제외) ⑫사출성형기 ⑬고소작업대(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)
- ⑭ 컨베이어 ⑮ 산업용 로봇

### 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 (2017년 1월 시행)

- (前) 산업재해(중대재해)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보고
- (後) '14.7.1이후 최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기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, 기간 내 보고한 것으로 간주

### ○ 도급인의 안전·보건 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(2017년 1월 시행)

- (前) 도급인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20개 위험장소\* 규정  
\* 토사 등의 붕괴, 화재, 폭발,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
- (後)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 철도차량, 양중기(크레인)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(2곳) 추가

### ○ 이륜자동차운행 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(2017년 시행 예정, 신설)

-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지급
- 이륜자동차의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 금지

### ○ 대형화재 피해우려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(2017년 시행 예정, 신설)

- 용접·용단 등 화기작업 중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

### 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, '중소기업 전용서체' 탄생!

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(고딕·명조)를 배포합니다. 저작권 고민 없이! 광고, 상표, 인쇄물, 현수막,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[www.kbiz.or.kr](http://www.kbiz.or.kr) 문의 02)2124-3093

중소기업중앙회는 매월 중소기업 인사·노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·숙지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「노무관리 Monthly Review」를 발간합니다. 현장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질의·건의 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) 2124-3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하며, 무단 복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